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경제지원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 경제지원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달서구 지식  
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달서구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개정)
-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관련  
규정 삭제(제11조 ~ 제18조 삭제)
- 2020. 8. 10. 폐지된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33조제1항 개정)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1. 25. 부터 2. 14.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2. 28.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034
----------	----------

제출년월일: 2023. 3. 3.  
제출자: 달서구청장  
(경제지원과장)

##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달서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식재산진흥위원회 비상설화(안 제10조 개정)
  -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 임기 등 내용 삭제(제11조~제18조 삭제)
  -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관련 규정 삭제
-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에서 지급하는 규정 수정(안 제33조제1항 개정)
  - 2020. 8. 10. 폐지된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 3. 참고사항

-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2】 참조

나. 관계법령: 【불임 3】 참조

- 1)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 2)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7조
-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 제3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 25. ~ 2.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행정규제 심사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6) 조례 · 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 【붙임 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항
  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 광역시달서구 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하고”를 “지급하고”로, “기금에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설치)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항</li> <li>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li> <li>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li> </ol> <p>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p>
<p>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ol>	<p>&lt;삭 제&gt;</p>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항

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구의원 1명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삭 제>

3. 초·중·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지식재산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3조(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31조에 따른 주민 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하고, 제32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등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기금에서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제33조(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 ① -----  
-----  
----- 지급하고  
-----  
-----  
----- 지급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붙임 3】

## 【관 계 법령】

### □ 지식재산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 발명진흥법

-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2.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략)

##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거나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6. (생략)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 조정실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